

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5월 13일

구 리 시 의 회 의 장

신 동 화 (서 명)

구리시의회 규칙 제47호

###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6항제5호 중 “제12조제2항”을 “제1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7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

제1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

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직원 보호 등) ①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

니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  
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규칙

### 1. 개정이유

내실 있는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」에 따라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·보완하는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(안 제4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물의징계에 관한 규정 강화(안 제13조)
- 다. 출장 후 심사위에서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·조사 의뢰 의무화(안 제14조)
- 라.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(안 제18조)
- 마.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조문 수정(안 제4조 제6항 제5호 및 제9조 제3항)